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수·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또는 빗물관리시설과 연계한 시설(유출지하수, 중수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 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환경정책과장 · 물관리과장 · 공원녹지과장 · 개발계획과장 · 건축계획과장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장
3. 수질 · 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법 ○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수도법 시행령 ○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수도법 시행규칙 ○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 (환경영향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수도법

제1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2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배수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회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12.4, 2008.8.26, 2008.12.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의2.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

1의3.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하위의 실행계획성격의 행정계획(입지가 있는 행정계획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정하여진 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2. 삭제 <2008.8.26>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4의2.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 ① 법 제4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4.2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1) 운하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 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농어촌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장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 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설정의 허가 전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광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 전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text{신설구간 길이의 합}/4\text{km}) + (\text{확장구간 길이의 합}/10\text{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text{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text{km}) + (\text{도시구간 길이의 합}/4\text{km})$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사업	담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삭도사업(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용삭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삭도·궤도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삭도·궤도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전
11. 관광단지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또는 신고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

	방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방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13. 특정 지역 의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건설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5. 폐기물 처리 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 2)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1)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사업만 해당한다)
- 2)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 3)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 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 1) 주택지 조성사업: 제1호가목
-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제4호나목
- 3) 도로건설사업: 제5호

바.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 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text{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dots$$

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요청 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카.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

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